

**2015년도 경북교육청-경북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3/4분기 노사협의회 결과**

2015. 11. 09.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행정지원과]

노사협의 안건 담당부서 검토의견

(작성자 : 기획조정관 주무관 김태환 ☎053-603-3687)

안건1-1 학교기본운영비 적정 배분과 효율적 운용

■ 안건 요지

- 학교여건을 감안한 세분화된 기본운영비 배부기준 마련
- 학교기본운영비 집행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기본운영비 배부 시 조정
- 교육지원청에 학교기본운영비 배부 조정권한 부여

■ 현황

- 학교기본운영비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마련한 표준교육비를 근거로 학교급, 학급수, 학생수 및 학교별 여건에 따라 배부
- 학교회계 예·결산 자료 및 각종 재정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도별 기본운영비 조정

■ 추진상 문제점

- 학교기본운영비는 표준교육비를 근거로 학교급, 학급수, 학생수, 학교별 각종 여건에 따른 지원기준 및 학교회계 집행결과와 각종 재정분석을 토대로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근거하여 배부하여야 함

■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 (수용 일부수용 수정수용 수용불가)

- 학교기본운영비 학교회계 집행현황, 학교별 여건, 교육재정 여건 등을 반영하여 2016년도 기본운영비 지원기준 조정 예정
- 학교기본운영비는 지원기준에 의거 배부하여야 하며 재정분석 등을 통하여 연도별 기본운영비 지원기준을 변경하여 그 기준에 의거 배부하고 교

육지원청 등에서 임의 조정하여 배부할 수 없음

노사협의 안건 담당부서 검토의견

(작성자 : 총무과 주무관 김현자 ☎053-603-3613)

안건1-2 사무관 승진심사 차별 시정

■ 안건 요지

- 사무관 승진심사 대상자 선정 시 학교 및 지역교육청 승진대상자 비율 조정

■ 현황

- 사무관 승진자 중 근무연수의 차이가 큼

연도	도교육청		초·중학교	
	승진인원	평균호봉	승진인원	평균호봉
2014	4	24.25	1	29
2015	6	24	1	30

■ 추진 상 문제점

- 교육지원청과 초·중학교를 하나의 평정단위로 평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초·중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 서열순위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정되는 경향이 있음.
- 평정단위기관에서는 현직급 경력, 총경력, 업무의 조직 내 비중, 평정대상 공무원 간의 성과의 상대적 차이, 조직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평정 서열명부를 작성하고 있음.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일반직공무원 보직관리규정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은 규정 또는 본인 희망에 따라 순환 전보되며, 사무관 승진심사 대상자는 승진임용 예정인원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의 배수범위로 결정됨.

- 승진후보자명부는 6급의 경우 최근 2년 이상의 근무성적평정점수를 반영하므로 현재 소속된 기관 비율로 승진임용 대상자를 결정하기는 어려움.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 (수용 일부수용 수정수용 수용불가)

- 사무관 승진심사 대상자는 공무원 개인의 2년간 근무성적평정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 순으로 결정되는 반면, 현재 소속된 기관을 기준으로 승진 대상자 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방법적으로 불가능함.
- 현직급 경력 및 총경력, 조직내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근무기관 상관없이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우대 받을 수 있는 균형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사협의 안건 담당부서 검토의견

(작성자 : 총무과 주무관 박민수 ☎053-603-3618)

안건1-3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 안건 요지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특별휴가일수 확대

■ 현황

- 특별휴가일수 현황

내 용		특별휴가일수			
구 분	대 상	교육청	노조요구안	도청	국가공무원
결 혼	본인	5	5	5	5
	자녀	1	1	1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	×	×
출 산	배우자	5	5	5	5
입 양	본인	20	20	20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5	5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3	2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3	2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1	1	1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대상추가)	×	포함	포함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	1	×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1	×	×
기타	자녀 군입대	×	1	1	×
	가족돌봄휴가(부모휴가)	×	연5일	×	×

추진상 문제점

- 각급학교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하는 교원과 지방공무원이 근무하는 이원화된 조직으로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일수를 확대하는 조례 개정 시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 일선 각급학교의 교직원간 위화감 및 갈등을 조장 할 수 있어 조례 개정에 어려움이 따름

노사협의 안건 담당부서 검토의견

(작성자 : 총무과 주무관 박 상 숙 ☎ 053-603-3629)

재무정보과 주무관 김 대 호 ☎ 053-603-3674)

안건2 신청사 이전에 따른 정주 대책 강구

■ 안건 요지

- 신청사 이전에 따른 정주(직원 복지) 대책 강구

■ 현황

- 2015 신청사 준공 완료 및 2016 상반기 이전에 따른 정주 여건에 대한 복지 대책 방안
※ 신청사 이전 관련 설문조사 [붙임] 참조

■ 추진상 문제점

- 신청사 이전에 따른 정주 여건 및 이전 직원에 대한 복지 대책 요구

■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 (수용 일부수용 수정수용 수용불가)

- 이전 직원의 주거 대책(관사, 주택 구매 및 전세 입주 시 교육청 지원 대책 등)
 -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급
 - 근거: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 지급대상: 신청사에 근무하는 본청 소속 직원
 - 지급금액: 30만원/월(3년간)
 -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 재무정보과 소관
 - 대상자: 청사이전지(안동, 예천) 내 무주택자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한 자
 - 지원방법: 1인당 2천만원 한도(무이자), 2년 연장가능(최장 4년)
- ※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중, 시행규칙 개정 예정

- 출·퇴근 지원을 위한 통근버스 운행

기관명	통근버스 (대구↔신청사)	통근버스 (안동·예천↔신청사)
교육청	5대(일차 4, 자체 1)	1대(자체)

○ 정주 여건 조성(어린이집, 체육시설, 도서관, 식당 등)

- 어린이집: 추후 제반여건 검토후 설립여부 결정(도청 어린이집 120명)
- 체육시설: 체력단련실 확충 운영
- 도서관: 행정자료실 확대 운영(서가 및 열람대 추가 설치 등)
- 식당: 직원 복지관 확대 운영(좌석수 확대 및 식탁·의자 등 전면 교체)

노사협의 안건 담당부서 검토의견

(작성자 : 행정지원과 주무관 장세은 ☎053-603-3692)

안건3 교육감과의 참 좋은 대화 결과 조치 사항

■ 안건 요지

- 지방공무원과 교육감과의 참 좋은 대화에서 건의된 내용의 추진 사항 요구

■ 현황

- 개최일: 2015. 7. 29.(수)
- 참가자
 - 교육청측: 교육감, 행정지원국장
 - 노조측: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
 - 대화자: 직렬별 지역별 대표자 23명
- 대화 안건: 총23건
- 기타 교육감 특별지시 사항 없음
- 대화 안건 목록 21건 별첨(교육감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대화내용은 제외)

■ 추진경과

- 해당 안건에 대해 이미 부서별 검토의견을 받았으며, 교육감과의 대화 시 특별히 지시한 사항이 없어 해당부서에 별도 통보하지 않음
- 울릉도 공무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포항교육지원청에 사업소 설치 요구 건은 포항교육지원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므로, 울릉교육지원청의 의사표시가 필요함 (울릉교육지원청에 해당 사항에 대해 전언으로 통보함)

■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 (수용 일부수용 수정수용 수용불가)

- 교육감과의 대화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하겠음

2015 지방공무원과 교육감과의 대화 안건에 대한 결과

순	대화안건	교육감(부서) 의견
1	교육실무직 퇴직금 지급 방식(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정해 줄 것을 건의 ※확정급여형: 매년 퇴직금을 별단예금으로 적립하고 퇴직 시 산정방식에 따라 지급 ※확정기여형: 매년 퇴직금을 시중은행에 예탁하고, 은행자금운용(펀드 등) 수익에 따라 지급	도교육청에서 쟁점사항으로 논의 중이며, 시도교육청 공동 협의를 통해 방안 마련 예정
2	나홀로 행정실장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책과 겸임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방안	겸임교사의 경우 출장여비를 지급하는데, 도 수준과 맞추도록 노력하겠음
3	지역청 기록연구사 순회근무를 통한 학교 기록물 폐기	지역청에서 기록물폐기 연수를 통해 자체폐기가 되도록 검토 필요
4	학생들의 독서교육 강화를 위한 도서관의 역할	도서관이 시민의식을 키우는 역할을 하도록 평생교육 강화 당부
5	교육안전단에 보건6급 증원에 대한 의견	조직운영상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파악 후 검토예정
6	시설관리직, 운전직, 조리직렬 충원을 신규공무원 채용을 하지 말고 외부용역으로 전환 의향	외부용역도 장단점이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할 사항임
7	시설직의 지역 근무기간(최장2~3년)을 감안해서 직원 사택 확보로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 건의	타직렬과 형평성 측면에서 특정직을 위한 사택확보는 곤란하며, 공무원 전세자금 지원 등 배려하고 있음
8	2천만원이상 학교시설공사를 지역교육청에서 집행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학교시설분야는 행정실장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바람
9	일반직의 도교육청 전입을 기피하는 현실에서 도교육청 근무자에 대한 강화된 인센티브 부여로 우수한 인재 영입이 가능하도록 건의	보직관리규정 개정을 위한 TF팀에서 방안을 검토하겠음
10	병설유치원 3학급 이상 초등학교 행정직 정원1명 추가 배치 건의	총액인건비 제도에서 정원 운용상 어려움이 있음
11	지역교육청별 행정직원 학습 동아리 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대한 건의	예산사정을 고려해 연차적 증액 및 사업 확대에 노력함

12	지역교육장·교육감과 학생들과의 정기적인 대화·토론으로 학생과 소통해서 함께 만드는 미래 학교 모습을 정책에 반영 가능한지 의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함
13	학생수 감소에 따른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한 의견과 원활한 통폐합 추진을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과 교직원의 역할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적정규모 학교 육성에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하되 교직원은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힘써야함
14	각종 학교 안전관리교육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일괄 수요 조사 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은 집합 및 사이버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도 필요한 교육과정은 연수원과 협의하여 신설을 검토하겠음
15	일반직과 교원의 상호 이해를 위해 초급 수준의 연수과목 개설 건의 (일반직: 교육학, 교원: 회계과목)	행정실장이 직원대상 회계 교육을 해주길 바라며, 특히 교감의 회계업무를 강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16	일선 학교에 교육실무직원에 대한 표준메뉴얼 보급 건의	교육실무직원에 대한 제 규정 제정 완료 후 업무 전반에 관한 매뉴얼 개발/보급을 검토하겠음
17	일정규모 이상 초·중학교에 사무관 배치에 관한 의견	2016년부터 학급수를 기준으로 사무관이 배치될 것으로 예상함
18	학생생활기록부 및 졸업대장 전산화를 도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청에서 통합 추진 방안 건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일시에 전산화 작업은 무리가 있음.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검토하겠음
19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른 학력 저하, 인프라 부족 등 학부모의 우려에 대한 방안과 의견	23개 지역청에 진로체험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체험처의 질 관리에 노력하겠음
20	연구·시범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 경우 인사이동 시 가점 부여에 대한 의견	연구시범학교를 축소시켜야 하며, 업무량과 형평성 문제로 가점부여는 신중해야함
21	울릉지역 특수성에 따른 울릉교육청 공무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포항지역에 사무소 설치 건의	울릉교육청의 요청이 있으면 포항교육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함

* 교육감의 개인적인 의견에 관한 질문(여가생활, 스트레스해소법, 교육철학)은 제외함

노사협의 안건 담당부서 검토의견

(작성자 : 학교지원과 주무관 김병기 ☎053-603-3703)

안건4 소규모 통학차량 재배치 후 잉여 인력 재배치 계획

안건 요지

- 학교별 승차인원에 맞게 차량을 적정하게 재배치 및 잉여(여유) 차량을 도출하여 차량을 감축하는 등 차량 관리 효율성 제고 방안 강구

현황

- 통학차량 현황

(기준: 15.4.1. 현재, 단위: 교, 대)

구분	공립							사립							합계 ①+②
	단설 유	병설 유	초	중	고	특수	계①	유	초	중	고	특수	계②		
학교수	12	451	472	202	101	3	1,241	248	3	73	91	5	420	1,661	
차 량 수	직영	3		381	17	8	10	419	354		9	13	16	392	811
	임차	9	169	76	15	46	1	316	105	2	33	111	5	256	572
	지입		1	5				6	29		3	11		43	49
	계	12	170	462	32	54	11	741	488	2	45	135	21	691	1,432

추진상 문제점

- 통학차량을 “학교소유”라는 배타적 이용 관행이 보편화 되어, 학교간 재배치에 소극적임
 - 승차정원 대비 승차인원이 적어 소형 차량으로도 충분히 통학 지원이 가능함에도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 지원 등 통학목적외 이용을 위하여 대형차를 선호하여 재배치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잉여(여유) 차량 도출하여 차량 감축시 통학노선 재설계 또는 조정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 통학시간이 길어지는 문제에 따른 민원 발생과 통학 용도외 현장체험학습 용도로 사용 목적으로 학교장은 임여(여유) 차량을 도출하여 차량을 감축이 가능하더라도 차량 감축에 비협조적임
- 차량 감축을 위한 통학노선 조정시 운행시간 증가에 따른 일부 운전원이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어 감축에 어려움이 있음

검토의견 ((수용 일부수용 수정수용 수용불가))

○ 차량 감축 및 재배치 세부 추진계획

- 통학차량 현황 자료 및 현장 실사를 통하여 차량 감축이 가능한 여유(잉여) 차량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중점 추진대상 학교 선정 ('15.11월 중)

유 형	중점 추진대상 학교
★ 운행노선 재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대 이상 다수 차량 배치 학교  폐교학구 학생수 급감 학교  잔여 차량을 활용하여 운행시간 1시간 내외로 조정하여 차량 감축 가능 학교
★ 적정 차형으로 재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2대 이상 다수 차량 배치학교 중 지역내 적정 한 차형(중형~대형)으로 재배치하여 차량 감축이 가능한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 승차정원 대비 승차인원 확인
★ 공동운행 확대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간 운행노선 재설계 또는 조정을 통한 공동운행이 가능하여 차량 감축 가능학교
★ 택시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수 급감 학교  탑승인원 소인수(8명 이내) 차량

- 여유(잉여) 차량 도출 결과에 따른 운행여건 등 제반 문제점 검토 후 감축 및 재배치 관리계획 수립('15.12월)

노사협의 안건 담당부서 검토의견

(작성자 : 재무정보과 주무관 권영미 ☎053-603-3743)

안건5 공무상 국외여비 과다 지출에 관한 사항

■ 안건 요지

- 공무상 국외 출장(배낭여행 포함)시 계약된 여행사의 계약금액이 과다함 배낭여행의 경우 1인당 약 4,000,000원 정도 소요⇒인터넷 최저가 보다 높음

■ 현황

- 사업부서에서 계약 요청하는 건에 대해서만 계약업무 진행
※ 2013 ~ 2015 공무국외연수 현황

구분 년도	조달청계약요청	자체계약		
		2단계입찰	입찰	수의
2013년	2건	1건		
2014년			3건	
2015년			3건	1건

- 지방공무원 배낭여행의 경우 총무과에서 국외여비로 예산편성하여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있음

■ 추진상 문제점

- 사업부서에서 긴급하게 계약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입찰 진행일정 상 어려움이 있음

■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 (수용 일부수용 수정수용 수용불가)

- 국외연수는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상 국외여행 규정에 따라 추정 가격 2천만원 이상의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 체결하고 있어 업체 선정에 따른 공정성 확보 및 예산절감 효과가 크다고 생각 됨
- 인터넷 최저가의 경우 옵션품목이 많아 계약금액만으로 비교는 어려움
- 인터넷 최저가의 경우 계약금액이 적을 수는 있으나, 연수의 질과 옵션 진행에 따른 불만이 제기될 소지가 많음

노사협의 안건 담당부서 검토의견

(작성자 : 학교지원과 주무관 최현진 ☎053-603-3704)

안건6 교과서 대금 목적사업비로 전환

■ 안건 요지

- 교과서 대금을 학교기본운영비 통합사업비에서 목적사업비로 전환 요구

■ 현황

- 초·중학교 학생(의무교육대상), 특수교육대상 학생 및 고교 저소득층자녀 교과서 대금이 학교기본운영비 통합사업으로 편성
- 본예산 편성 시 학교별 교과서 기본 단가(검·인정 교과서)가 다르고, 학생 수의 정확한 예측이 곤란하여 예산액과 실제 집행금액의 편차가 큰 학교의 경우 추경을 통해 부족분을 확보한 뒤 집행해야 하므로 대금 정산이 늦어져 지역공급소의 민원이 자주 발생
- 교과용도서 지원 사업이 교육비특별회계 교육복지지원(정책사업)으로 분류되어야 하나 학교기본운영비에 통합 되어있어 교육재정공시 및 각종통계 작성 시 교육복지분야 투입예산의 비율이 왜곡됨.

■ 추진상 문제점

- 교과서 대금의 집행 시기가 2월말 ~ 3월초이므로 전년도 예산으로 신년도 교과서 대금을 집행하는 학교와 당해연도 예산으로 당해연도 교과서 대금을 집행하는 학교가 혼재하여 2016년도 본예산 편성 및 집행상의 혼란이 있을 수 있음. (단위학교 2015학년도 교과서 구입비의 불용액 발생 등)

■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 (수용 일부수용 수정수용 수용불가)

- 2016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사업분석 T/F팀 분석 결과(기획조정관-14656, 2015.8.26.)에 따라 교과용도서 지원사업을 학교기본운영비 통합사업에서 목적사업비로 전환하여 지역교육청에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노사협의 안건 담당부서 검토의견

(작성자 : 기획조정관 주무관 김태환 ☎053-603-3687)

안건7 행정실무사 인건비 교무행정사와 동일하게 책정

■ 안건 요지

- 행정실무원 인건비 교무행정사와 동일하게 책정

■ 현황

- 행정실에서 학교회계업무를 보조하는 행정실무원은 (구)육성회직과 행정실무원으로 구분되고 2014년 “행정실무원”으로 직종통합하여 정·현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구)육성회직과 교무행정사(행정실무원 포함)의 직종간 보수체계가 상이함
 - (구)육성회직: 기능직공무원 10급 4호봉 보수체계 적용
 - 행정실무원 및 교무행정사: 교육부 학교회계직원 보수체계 적용

■ 추진상 문제점

- (구)육성회직과 교무행정사(행정실무원 포함)의 인건비를 동일하게 책정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보수체계의 통일이 필요하나
- 교무행정사 및 행정실무원보다 다소 높은 보수를 받고 있는 (구)육성회직은 최근 10년간 보수체계의 변동이 없었으며, 직종별 근로자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보수체계를 통일(직종별 상향 또는 하향조정)할 경우 인건비 예산 문제, 근로조건 저하 및 노동사건의 발생 우려가 있음

■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 (수용 일부수용 수정수용 수용불가)

- 직종별 보수체계 조정은 관련부서와의 협의 및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해당 직종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직종별 이해관계 등 각종 문제점 발생 우려가 있음

노사협의 안건 담당부서 검토의견

(작성자 : 기획조정관 주무관 김태환 ☎053-603-3687)

안건8 지방공무원 출납수당 신설 요청

■ 안건 요지

- 지방공무원 출납수당 신설

■ 현황

- 고등학교는 학교운영지원비 수입금으로 지방공무원 출납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유,초,중,특수학교는 학교운영지원비 수입금이 없으며, 출납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음

■ 추진상 문제점

- 지방공무원 출납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가 있어야 하나 관련 근거가 없음

■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 (수용 일부수용 수정수용 수용불가)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가 없어 출납수당 지급 불가

노사협의 안건 담당부서 검토의견

(작성자 : 행정지원과 주무관 강정진 ☎053-603-3313)

안건9 교직원 현황조사 서식 변경

■ 안건 요지

- 교직원현황 조사 서식 변경

■ 현황

-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 국민권익위원회 2015년도 청렴도 측정 서식 중 직렬별 정원표 조사 서식에 구 기능직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 추진상 문제점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서식은 타 부처 및 타 공공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서식이라 우리 교육청만 서식을 임의 변경할 수 없는 애로가 있음

■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 (수용 일부수용 수정수용 수용불가)

- 청렴도 측정 서식 중 “기능직” 명칭은 삭제(변경) 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